

「2024 전주시 국제기구 청년인턴 프로그램」 참가자 모집공고

지역 대학(원)생에게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설계를 돕고 이를 통한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전 세계 지방정부의 연합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-아시아태평양지부와 공동 추진하는 「2024 전주시 국제기구 청년인턴 프로그램」 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,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8월 29일

전 주 시 장

1. 사업개요

가. 파견기구 :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(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본부)

나. 기 간 : 2024. 12월 ~ 2025. 2월(8주)

다. 인 원 : 2명

라. 자격요건(공고일 기준)

※ 세부붙임

- 만 30세 이하로 공고일 기준 전주시 소재 대학(원)생
- 영어가 능통하고 직전학기까지 학점 3.5점 이상인 자
-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마. 지원내역 : 1인 8,000천원 한도(항공료, 체재비, 보험료 등)

바. 주요역할

- 전주시-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국 간 주요 연락관 및 사업추진 협조
- 전주시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해외홍보 협조
- 인턴 공동 프로젝트(Pair Project) 수행
- 세계 지자체 주요 동향 및 주요정책 공유 등

2. 접수개요

가. 모집공고 : 전주시 홈페이지

나. 자격요건 :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※ 전공불문

- 만 30세 이하로 공고일 기준 전주시 소재 대학(원)생 ※ 휴학생 가능
- 영어가 능통하고 직전 학기까지의 학점 3.5점 이상인 자 등
- 영어 회화 및 작문 수준이 상급 이상인 자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다. 접수원칙 : 이메일접수 (dan21@korea.kr)

라. 접수기간 : 2024. 10. 7.(월) 09:00 ~ 10. 11.(금) 18:00까지 /시간 엄수

마. 제외대상 (아래에 속하는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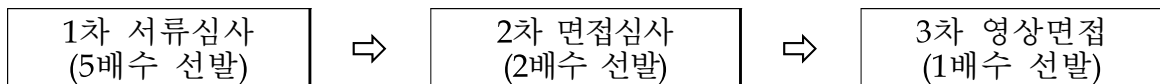
- 타 해외인턴지원 사업에 참여 중 혹은 참여 경험자
-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
- 국내거주 중인 해외 국적 소지자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타 해외 인턴지원 사업에 채용되었던 자
- 인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

바. 제출서류

- ①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
- ② 성적증명서(직전 학기까지)
- ③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
- ④ 어학자격증(TOEIC 860점 기준 이상/공고일 기준 2년이내) *어학 가산점 5점 이내
※ TOEIC 이외 공인인증 영어성적은 그에 준하는 환산점수로 인정
- 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

3. 선발방법

○ 선발절차 및 합격자



○ 서류심사 : 성적증명서, 인턴계획서, 외국어 능력 등

○ 면접심사 : 시 집합 일괄면접으로 영어면접 시행

4. 참고사항

가. 인턴자격 박탈 및 지원금 환수

- 아래 항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 자격을 박탈 및 해지하고 인턴 철수 및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 - 별도 통보 없이 활동보고를 누락 시
 - 별도 통보 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
 - 국내취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귀국한 경우
 -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인턴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고의로 주어진 업무에 태만하거나 인턴단체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
 - 인턴기간 중 불법,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현지체류가 불가능한 경우
 - 인턴단체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인턴단체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

○ 지원금 환수

- 인턴신청서 허위사실 기재 시 등 중대한 문제 발생 시 : 항공비용 등 전액
- 위의 인턴자격 박탈 확실 시 : 귀국항공비(항공비 반액) 및 체재비 일할계산 잔액
- 천재지변 혹은 전주시와 국제기구 사무국 판단 합당한 사유 발생 시 : 체재비 일할계산 잔액

○ 기타사항

- 본 프로그램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대학생들의 글로벌체험을 위해 추진 되는 사업으로 무급으로 진행됨

나.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

○ 일 정 : 2024. 11월 중

○ 장 소 : 전주시청 등

○ 교육내용

- 관련 직무교육(세계지방정부연합 개요 및 기대역할 등)

※ 현지 담당자들과 온라인 미팅 진행

- 전주시 기본현황 및 주요핵심정책 등
- 현지 문화교육, 국제매너 및 인성 등

※ 별도의 노력 없이 불참할 경우, 인턴 활동 의사 없음으로 간주(탈락 및 후순위 선발)

참고1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(결격사유)

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(결격사유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참고2

사업추진 관련 근거

□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

(제정) 2015.11.06 조례 제323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·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·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방대학”이란 전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지역인재”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전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의 범위)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육·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·연구용 시설·설비의 확보
2.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·연구조성비·장학금 지급 등
3. 정부기관 또는 전라북도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지원사업
4.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
5.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

제5조(지원사업의 신청)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전주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·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
2.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품위손상, 장기불참(3회 이상)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촉 당시의 직 상실,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,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

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실비변상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방법 및 정산)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.

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전주시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제정 2015.11.6. 조례 제323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붙임1>

2024 전주시 국제기구 청년인턴 프로그램 참가신청서

성명	(한글)	성별	남, 여	사진 반명함판(3.5×4.5cm) 탈모 상반신 사진			
	(영문)	생년월일 (만 세)				
지원기구							
연락처	휴대전화						
	e-mail						
대학교	대학(교)	학부(과, 전공)	학년(재학, 수료, 휴학)				
	입학일자	년 월 일	졸업예정 년 월 일				
활동사항	기관명	활동기간	활동내용				
자격증	종류	발급기관 및 번호	취득일				
언어 평가성적	언어명	평가기관	성적/만점	회화실력			비고
				상	중	하	

년 월 일
서명 (인)

<붙임2>

자기소개서 및 인턴계획서

- * 필수사항(관심분야/지원목적)를 포함하여 2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
- * 파견지역(인도네시아 자카르타) 내 전주시 홍보방안 포함하여 작성
(예시: “전주의 한지 공예품 소개”, “전주의 한식소개” “전주와 자카르타의 공통점” 등)

<붙임3>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「2024 전주시 국제기구 청년인턴 프로그램」 참가자 모집 응시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전주시장 재증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2024 전주시 국제기구 청년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심사 운영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
수집·이용할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개인식별정보 외에 입사지원서(이력서) 등에 제공한 정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자격사항, 교육사항, 경험 혹은 경력사항 등
보유·이용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·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심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.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심사절차 진행 불가 또는 우대자격 인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수집·이용 동의 여부	귀 기관이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

2024년 월 일

성 명 :

서명 또는 (인)